##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송정빈 의원입니다.
- 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□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8조에 따르면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 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면률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30조제3항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」제16조제2항의 대부료 관련 규정을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시설 활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 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